

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발생 및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적정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

- 2개소 : 문수의집(남아/신규위탁), 아이좋은집(여아/재위탁)

나. 추진근거

- 1)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)
- 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3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4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6조

다. 필요성

- 1) 아동보호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
- 2) 행정비용 · 재정 절감으로 효율성 증대

라. 위탁사무 :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·운영 전반

- 1)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, 생활지원, 상담 및 치료, 교육·정서 지원
- 2) 종사자 인사, 회계, 시설 및 물품 관리 등
- 3)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마. 시설개요

-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		인가일	위탁사유
		종사자	정원	면적(m ²)		
문수의집 (신규위탁)	구미시 관내 (비공개)	6	7	98.5m ² (2층 주택)	03.03.19 (재개 16.05.19)	운영 재개 후 위·수탁 미체결
아아좋은집 (재위탁)				111.66m ² (1층 주택)	21.07.08 (개소 21.09.01)	위·수탁 기간 만료 도래 (25.12.31)

바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 12. 31.(5년)

사. 위탁조건

- 1)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, 단체사무 처리 불가
- 2)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
- 3) 「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구미시와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아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최종 선정

자. 소요예산 : 728백만원(국 30% 도 21% 시 49%) ※ 2026년 기준

- 시설당 364백만원(인건비 82%, 운영비 4%, 사업비 14%)

차. 적정성 검토 : 적정 ※ 2025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- 신규 위탁(문수의집), 재위탁(아이좋은집)

카. 성과평가 결과 : 우수(82점)

- 재위탁 대상 아이좋은집(여아쉼터)에 해당

3. 부서의견

- 1)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정
- 2) 피해아동의 다양한 복지 욕구 대응 시 축적된 민간 전문지식 활용 용이하고, 행정비용·재정 절감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제고 가능
- 3) 공개모집을 통해 여러 기관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, 경쟁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기여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나. 비용추계서

다. 성과평가 결과

학대피해아동쉼터(아이좋은집) 성과평가

1. 평가개요

- 추진근거 :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, 제23조
- 기 간 : 2025. 7. 3.(목) ~ 7. 4.(금)
- 대 상 : 학대피해아동쉼터(아이좋은집)
- 위탁 기관 : 다사랑 사회적협동조합
- 평 가 자 : 2명(아동보호팀장, 업무담당자)
- 평가방법 : 평가표[붙임]에 의한 현장평가
- 평가항목 : 7개 항목 20개 지표(사업계획, 인력관리 등)

◇ 공통분야(40점)

- ① 사업계획 :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집행 준수
- ② 인력관리 : 조직·인력관리적성성, 근태관리
- ③ 예산관리 : 예산 및 지출 관리 체계 및 집행의 적정성
- ④ 성과관리 : 사업목표 달성 수준,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

◇ 개별분야(60점)

- ① 조직운영 : 시설 환경, 시설장 리더쉽, 직원 역량강화 및 복지 등
- ② 아동의권리 : 비밀보장,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, 고충처리
-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: 개별서비스 제공의 전문성,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

2. 평가결과 및 총평

- 결 과 : 82점(우수) * 60점 이상 시 재위탁/재계약 가능

총점 (100)	공통분야(40점)				개별분야(60점)		
	사업 계획 (10)	인력 관리 (10)	예산 관리 (10)	성과 관리 (10)	조직 운영 (30)	아동의 권리 (15)	프로그램 및 서비스 (15)
82	8	7	7	8	25	14	13

○ 총 평

- 아동학대로 피해 입은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,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,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.
- 또한, 시설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복지 증진과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관계법령

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

·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, 치료,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, 아동학대 발생건수,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
2.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·치료
3.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·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

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⑥ 생략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~ ⑥ 생략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) ①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 등)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위탁시설 개요
5. 민간위탁기간
6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7. 수탁자 선정방식
8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재계약의 경우 위탁사무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위탁사무의 성과보고서
10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, 인건비, 사업비 등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 보조사업 내시 산출 근거에 따라 편성
- 나.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, 매년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가. 5년간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(2개소)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총 4,010,000천원으로 연평균 802,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- 나. 2차 연도부터 매년 인상률 약 5%로 반영함.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728,000	765,000	802,000	839,000	876,000	4,01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-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 보조사업, 자체 재원 마련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218,400	229,500	240,600	251,700	262,800	1,203,000
도비	152,880	160,650	168,420	176,190	183,960	842,100
시비	356,720	374,850	392,980	411,110	429,240	1,964,900
민간	-	-	-	-	-	-
기타	-	-	-	-	-	-
합계	728,000	765,000	802,000	839,000	876,000	4,010,000

5. 부대의견 : 본 추계결과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 : 아이돌봄과 아동보호팀 서인석(☎480-659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사무명			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
위탁금			4,010,000천원(5년간)
위탁금 세부내역			
기간	항목	계(천원)	산출내역
2025년 기준	합계	728,000	
	인건비	596,000	• 급여 및 제수당 등 : 298,000천원 × 2개소
	운영비	38,000	•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: 19,000천원 × 2개소
	사업비	94,000	•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비 : 47,000천원 × 2개소 - 심리치료, 교육비(도서구입 등), 의료비(건강검진 등)

※ 매년 약 5% 인상률 기준

소 관 부 서		아이돌봄과
입 안 자	과 장	박 용 자
	팀 장	이 재 삼
	담 당 자	서 인 석 (480-6593)